
입 법 정 보

2019-1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2.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5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5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6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7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9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9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부).....	10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여성가족부).....	11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11
1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1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3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5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6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22.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7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8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8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9
2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0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1
2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2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2
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23
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4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5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5
3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7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8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8
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8
3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9
3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9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0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0
4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0
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31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32
4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3
47.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9.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4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5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5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6
5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5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7
5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8
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8
5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39
5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39
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6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2

정부입법 예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22. • 마감일자 : 2019. 9. 2.
- '17.10.18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 21.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을 때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음(기존: 매연 → 개정: 매연, 질소산화물)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질소산화물 세부 검사방법을 추가로 정하여 '21년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제3호 나목2)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같은목 2)가)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질소산화물 농도 추가(안 별표 26)
 - 나. 같은목 2)가)의 (1)에 질소산화물 측정방법을 추가(안 별표 26)

2.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7. 22. • 마감일자 : 2019. 9. 2.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 1) 재난관리평가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5조의3)

-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7. 23.

• 마감일자 : 2019. 8. 2.

○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 1)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

마. 취업상황 등 신고(안 제7조)

- 1)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안 제8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함.

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1)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
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1) 그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1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7. 26.
- 마감일자 : 2019. 8. 16.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및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등 가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8조제2항)

1)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함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7. 29. ● 마감일자 : 2019. 9. 9.
-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되,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영업자는 상호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에서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에서 식육 등을 가공·보관·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7. 29. ● 마감일자 : 2019. 8. 19.
-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 1) ‘19.3월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22.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7. 29.
- 마감일자 : 2019. 9. 9.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함.

현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부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진 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이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으로 명확화·완화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7. 29.

● 마감일자 : 2019. 9. 9.

○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7. 30

● 마감일자 : 2019. 9. 9.

○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및 예·결산 현황 제출 (안 제10조의4)

1)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현황이 파악되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저하 및 사업의 효과·효율성 검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자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별도 검토하고, 재

난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및 결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 (안 제14조)

1) 대규모 원전사고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방사선탐사 제염 등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나, 주민소개 및 범정부차원의 이재민구호 등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차장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대책지원본부 구성·운영 (안 제17조의2)

1)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의 조기수습 지연 및 관계 타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 (안 제26조) 1) 국가기반시설 지정권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정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는 등 추가 지정에 한계가 있음

1)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적극 재난관리 면책 (안 제77조의2)

1)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직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생길 경우 징계·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하도록 규정함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7. 30

● 마감일자 : 2019. 9. 9.

○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합리화(안 제26조)

- 1)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 로 합리화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별표 2)

- 1)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2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7. 30

● 마감일자 : 2019. 9. 9.

- 산림사업의 품질제고 및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 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 경력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산림산업기사 등의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의 기술경력 산정기준 등 근거 마련(안 제10조)

- 1)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완화(안 제10조 관련 별표3)

- 1) 현행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를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 으로 변경하고,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의 경우,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자

격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기술자 기술초급 진입 장벽 해소
다.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는 사업종류 확대 및 산림기술자등의 중복
배치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5)

- 1) 사업종류에 산림복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비 규모에 맞는 기술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진 산림공학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 2)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
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중복 배치기준을 마련함
- 3) 산림사업시행업 중 별채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규모를
면적기준(10만 제곱미터)에서 연간 별채량(5천 제곱미터)으로
변경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기준과 일치하도록 함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7. 30

• 마감일자 : 2019. 9. 9.

○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로 축소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유림보호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식의
“갑”, “을” 명칭을 개선하여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을 제거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조)

○ 주요내용

가. 체육장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 1) 체육장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2) 체육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설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
- 3) 교사대지 내 놀이시설 바닥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나. 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한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의2)

- 1)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경우 신축 후 3년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 2)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행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일부(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에 대하여 적용

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7. 30
- 마감일자 : 2019. 9. 9.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안 제2조제5호)

- 1) 법 제2조제5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함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융자(제18조) 등과 같이 소정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이에 의무고용, 장려금 지급 등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의 3)

- 1)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

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허용함.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 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 1)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

3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7. 31.
- 마감일자 : 2019. 9. 10.

○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km)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 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이동 시 10분소요)을 위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곤란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灣)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1)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

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안 제94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안 별지 제71호서식)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2)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안 별표12)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 (One-strike-out) 범위 확대 (안 별표 20)

- 1)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 2)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강화)

마.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안 별표 17,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안 별지 제50호서식)

-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14)
- 2)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안 별표 17)
- 3)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 4)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안 별지 제50호서식)

바.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79조, 안 별표 23)

- 1) 법률 상항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안 제79조)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8. 2.
- 마감일자 : 2019. 9. 11.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규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제외되어있어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등록 기준이 타 업종보다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그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양성기관 지정취소요건, 목재교육전문가의 배치 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 규정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추가
다. 제재업 제2종의 등록요건을 최소요건으로 완화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8. 2.
- 마감일자 : 2019. 9. 11.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

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나. 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다.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

4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8. 2.

• 마감일자 : 2019. 9. 11.

○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1)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 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 1)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7.
- 마감일자 : 2019. 9. 16.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침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 상 근거를 상향 규정(안 제5조 제1항제1호다목 신설)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것과 관련한 이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제4호)

- 1)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6.23.)으로 고엽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

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 1)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시행령 상의 대리수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 추가(안 제36조 제1호 가목)

1)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함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8. 7.

• 마감일자 : 2019. 9. 16.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능력 평가 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1)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

5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8. 8.

• 마감일자 : 2019. 9. 17.

○ 「의료기기법」 개정('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항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 1)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 1)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통보·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다.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및 5조)

-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비위사실·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 1)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9.

• 마감일자 : 2019. 9. 18.

-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호)

- 1)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호)

-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1.3배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완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범위에서 사업 추진 허용(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유지)

다.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세부 기준(안 제5조제4항)

- 1)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빈집의 매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1) 빈집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빈집밀집구역 정보(안 제14조의2)

- 1)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 1)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등 변경(안 제33조제1항)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을 변경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안 제40조제4항)

- 1)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산정토록 함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41조)

- 1)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

6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8. 9.

• 마감일자 : 2019. 9. 18.

○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 1)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 1)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 1)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